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70)

2. 제안이유

-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
(안 제7조제1항)
-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
(안 제7조제1항)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에 관한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 대상인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안전수칙 및 교통사고 예방법 등 교육을 통한 인지능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71)

2. 제안이유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시행 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물품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신설
-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준용규정) 삭제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시행 근거 마련과
-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언택트(Untact) 시대의 흐름 속에 배달문화가 변화하게 되고, 택배 냉동식품 주문량 증가로 인한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쓰레기 소각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수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을 지급하고, 수거된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은 냉동식품 사업장, 전통시장 등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는 본 개정안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67)

2. 제안이유

-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5조제4항제1호~4호)
- 용어 정비 및 미비점 보완 등 명확성 제고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5조제2항)
- 상위규범 준용에 따른 조례 내용 삭제(제11조 및 제1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수를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수당 등), 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불필요하여 삭제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 가능한 내용이므로 중복된 안 제11조(수당 등)을 삭제하고,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상위규범인 조례에서 하위규범인 규칙을 준용한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일부 정비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